

1. 개정이유

긴급항공기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운영자 등의 편의를 증대하고, 항공기 고장·결함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항공기 지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지정 신청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07조 등)

나. 긴급항공기 운항 전 통지 방식(기존: 구술, 서면)에 비행계획서를 추가하고, 운항 종료 후에도 비행 종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08조)

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해 이륙을 중단하거나, 운항 중 '비정상적인 출입문 개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장보고 토록 명확화(안 별표 20의2)

라. 별표 47 제15호(항공종사자) 및 33호(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수수료 납부자 대상에 자격증명서 재발급 대상자도 포함 하도록 개정(안 별표 47)

마. 운항증명서 서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발급자 성명·서명·직위'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유효기간)은 위치변경(안 별지 9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의 제목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긴급항공기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 신청서에 다음”으로, “사항을 적은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를”을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6호)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타 관련된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긴급항공기로 지정하였음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경우에는 별지 128호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의 긴급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규정
 2. 제1항의 긴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항공기 장착장비 목록 및 세부 사항(장착장비 사진을 포함한다)
- ⑤ 긴급항공기 지정을 받은 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해당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한다.

⑥ 긴급항공기 지정을 받은 신청자가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긴급항공기 지정서(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항공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긴급항공기 지정기록을 확인한 후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술 또는 서면”을 “서면, 구두 또는 비행계획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적은 긴급항공기 운항결과 보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1. 조종사 소속 및 성명

별표 20의2 제2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란(중전의 제2호나.) 2)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5호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항공기 시스템 기능장애 등 정비요인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1) 이륙활주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륙을 강행한 경우
- 2) 운항 중 여압조절 실패, 비정상적인 문·창문 열림 등 객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20의2 제7호나목 중 “운항 중 여압조절 실패, 비상장비의 탑재 누락, 비정상적 문·창문 열림 등 객실의 안전이 우려된”을 “항공기가 운항 중 여압조절 실패, 비상장비의 탑재 누락, 비정상적인 문·창문 열림 등 객실의 안전이 우려되는”으로 한다.

별표 47 제15호 중 “발급”을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하고, 제33호 중 “발급”을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9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7호서식, 별지 제128호서식 및 별지 제1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 항 증 명 서 AIR OPERATOR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운항증명번호(AOC No.): 유효기간(Expiry Date): 이 증명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반납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함. This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and unless returned, suspended or revoked, shall continue in effect until otherwise terminated.	사업자 명(Operator Name): - 주소(Operator Address): - 전화번호(Telephone): - 팩스(Fax): - 이메일(E-mail):	세부 연락처: 운영기준 Part () 참조 Operational Points of Contact: Contact details, at which operational management can be contacted without undue delay, are listed in Ops Spec Part().
AOC 형태(Type of AOC) ☐ International Air Carrier ☐ Domestic Air Carrier ☐ Small Commercial Air Transport Operator ☐ Aerial Work Operator		
이 증명서는 ()가 「항공안전법」 그리고 이에 관련된 모든 항공규정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수행토록 인가되었음을 증명함 This certificate certifies that () is authorized to perform commercial air operations and aerial work operations, as defined in the attached operations spec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s Manual and the Aviation Safe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gulations and standards.		
발행일자(Date of issue): 년(year) 월(month) 일(day)	성명 및 서명(Name and signature): 직위(Title):	
국토교통부장관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지방항공청장 또는 Administrator of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 내용	항공기 등록부호	형식 또는 모델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긴급한 업무의 종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장착된 장비		
	항공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그 밖의 참고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긴급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규정	수수료 10,000원
	2. 긴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항공기 장착장비 목록 및 세부 사항(장착장비 사진을 포함한다)	
	3. 조종사 및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	
	4. 기타 관련된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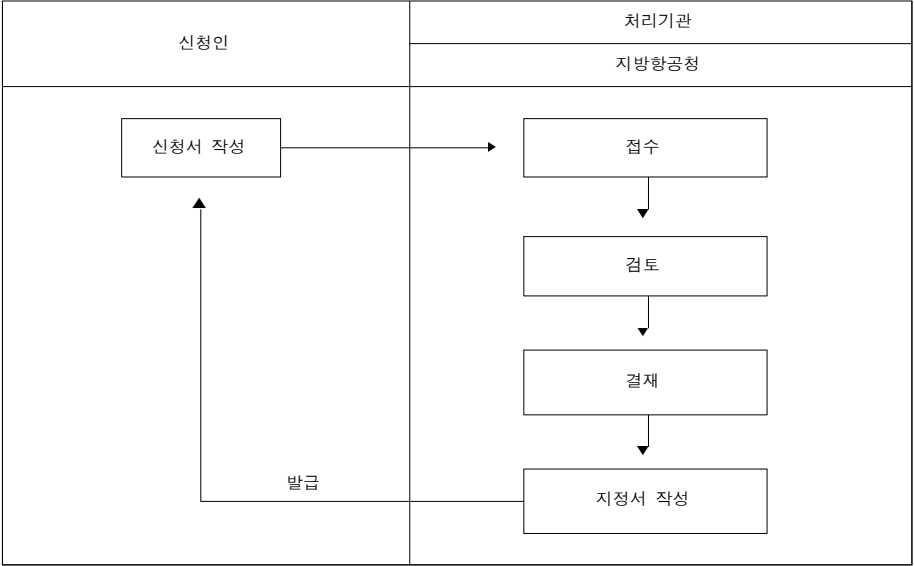
(뒤쪽)

유의사항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긴급항공기 지정서					지정번호
①상호 (법인명)		②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소재지)					
④항공기 등록부호		⑤형식 또는 모델		⑥항공기 제작 일련번호	
⑦긴급한 업무의 종류					
⑧비고					
위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130mm×95mm

(인쇄용지(특급) 70g/m²)

주 의 사 항

1. 지정된 항공기를 운항할 때에는 언제나 이 지정서를 탑재해야 합니다.
2. 이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제6항에 따라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 지정서는 「항공안전법」 제6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
4. 지정서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긴급항공기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정된 긴급 항공기	항공기 등록부호		형식 또는 모델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긴급한 업무의 종류				
재교부 신청이유		[] 분실 [] 못 쓰게 됨			
지정서 교부 연월일		. . .		지정번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항공기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10,000원
------	------------------------	----------------

처리절차



신청인 지방항공청 (긴급항공기 담당부서) 지방항공청 (긴급항공기 담당부서) 지방항공청 (긴급항공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7조(긴급항공기의 지정)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긴급한 업무의 종류 4. 긴급한 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규정 및 항공기 장착장비 5. (생략) 6.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제1항 각 호의 긴급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긴급항공기로 지정하였음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7조(긴급항공기의 지정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 신청서에 다음 ----- 서류를 첨부하여 ----- 1. 제1항의 긴급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규정 2. 제1항의 긴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항공기 장착장비 목록 및 세부 사항(장착장비 사진을 포함한다) <삭 제> <삭 제> 3. (현행 제5호와 같음) 4. 기타 관련된 서류 ④ ----- ----- 경우에는 별지 128호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긴급항공기 지정을 받은 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해당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한다.
<u><신 설></u>	⑥ 긴급항공기 지정을 받은 신청자가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긴급항공기 지정서(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⑦ 지방항공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긴급항공기 지정기록을 확인한 후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① 제207조제2항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긴급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	① ----- ----- ----- ----- -----

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운항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긴급항공기 운항결과 보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3. (생 략) 4.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5. ~ 7. (생 략)	- 서면, 구두 또는 비행계획서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사항 을 서면 또는 구두로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조종사 소속 및 성명 2.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6. (현행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	--